
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0.2.18>

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(제8조 관련)

구 분	기 준	
주 차 장	330m <sup>2</sup> 이상	
사 무 실	33m <sup>2</sup> 이상	
작 업 장	50m <sup>2</sup> 이상	
설 비	명 칭	수 량
	유 압 프 레 스 기	1대이상
	공 기 압 축 기	1대이상
	전기식자동건조로	1식이상
	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	1대이상
	무 인 기 계 경 비 장 치	1식
	철 형	대·중·소 보통형 각 1조이상
	기 타	시·도지사가 번호판제작·교부대행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

주 : 1. 시·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·사무실 및 작업장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2.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중 무인기계 경비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.